

의안번호	2213578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5.11.11.
추계번호	25B55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지원) 신설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지원)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36조¹⁾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

1)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애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조2)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3)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의 청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에 대한 요건, 대상,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대리 건수와 이에 대한 지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보험사무지원 및 플랫폼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 사업⁴⁾을 통해 행정력이 부족한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공인노무사 등의 보험사무 대행 사업을 추진 중임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2)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산재보험 적용부과지원(코드: 4058-351)의 내역사업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

자료: 고용노동부

- (제도 개요) 행정력이 부족한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 완화 및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촉진, 보험료의 적정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대행서비스 제공
 - (기관종류)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개인노무사(2년이상 경력) 개인세무사(2년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 (근거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7조⁵⁾
 - (대행업무) 보수총액 및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에 관한 신고,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등
 - (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 종류		대상 및 지원기준	지급 주기	금액
보험료납부지원금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별목업)에 대하여 보험료신고를 하고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80%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	반기	위임사업주당 16,000원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피보험자 관리대행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신고,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통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확인신고 등을 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12,000원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5,000원)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신고실적을 합산하여 지원
	보수총액 신고대행	법정 신고기한 내에 근로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연간	위임사업주당 18,000원(5명 미만), 24,000원(5명 이상) 위임사업주당 5,000원 ※ 10명 이상 신고 시 10,000원
		보험관계 소멸 시 법정 신고기한 내 보수총액 신고한 경우	소멸 시	위임사업주당 10,000원
사업장가입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대행한 경우(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만 성립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성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보험구분의 성립신고만 대행한 경우도 포함)	성립 시	위임사업주당 40,000원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원)
		중소기업사업주 등을 산재보험에 가입신청한 경우	분기	위임사업주당 40,000원 (분기별 10,000원씩 총 4회)
지급 제외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위임사업주 과세소득(법인: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개인: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92호